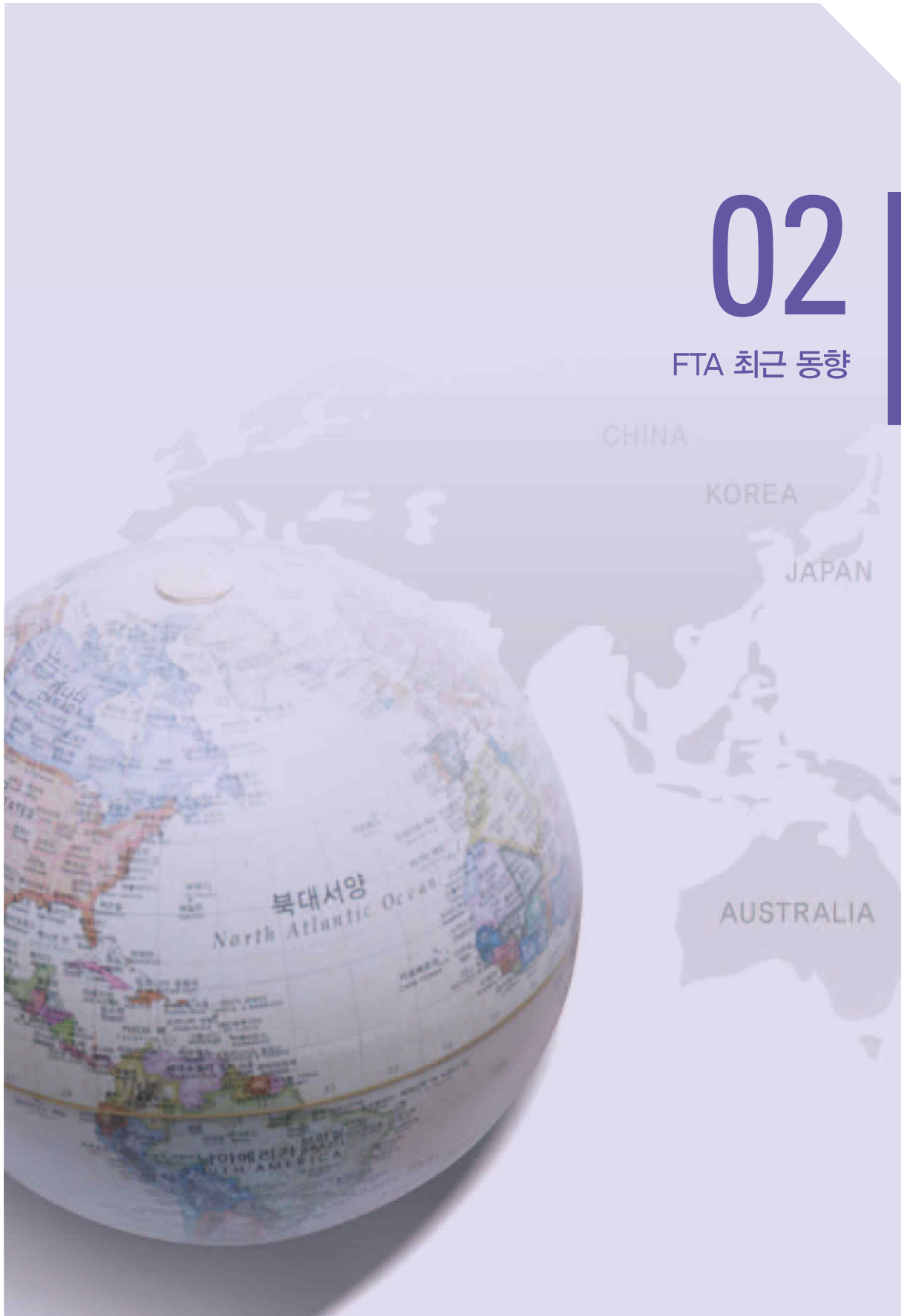


02

FTA 최근 동향



02. FTA 최근 동향



I. 관세청 주요 이슈



1) 관세청 16개 전국 시·도와 FTA 활용지원 협력(2013.05.22)

관세청에서는 5월 22일 서울세관에서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16개 광역 지자체, 경제단체·산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 제1차 FTA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는 'FTA 활용 지원 네트워크'구축을 통하여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FTA 중소기업 지원 대책(SG 500 Project)』⁴⁾을 소개하였다. 또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해당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강조하였다.

2) 관세청·포스코 FTA 활용 업무협력 MOU 체결(2013.05.24)

관세청과 국내 대표적인 소재공급 기업인 포스코는 5월 24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중소기업 FTA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본 계약식은 관세청(FTA집행 주무부처)과 포스코에서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MOU의 주요내용은 포스코가 재료를 공급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 정보 유통지원, FTA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 FTA활용 매뉴얼 제작·배포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FTA 동반성장 프로그램'등이다.

3)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검증 사례 설명회 개최(2013.05.29~2013.06.24)

관세청은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⁵⁾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FTA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빙자료의 보관 방법, 사후검증절차 및 대응요령이다. 또한 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4) FTA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 (2013.06~)

관세청은 기업의 검증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전국단위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FTA 사후검증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FTA 상담 전담코너』를 신설한다. 본부세관 FTA 원스톱 지원센터에 "FTA 사후검증 요령 자문팀"을 설치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아울러 본부 세관에는 기업들에게 상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전담 관세사를 지정·운영하여 기업의 FTA 사후검증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4) FTA Small Giant 500 Project : FTA 활용이 미흡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FTA 활용을 통해 수출이 연 100% 이상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500개 이상 육성 지원하는 프로젝트임
5) FTA 용어집 11번 참조

II. 우리나라 FTA 동향

1) 한·중·일 FTA 협상 개시, 동북아 통합 추진 : 1차 협상 완료(2013.03.26~28)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한·중·일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3월에는 1차 협상이 종료되는 등 미국, EU 등 주요 선진 경제권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FTA도 적극 추진 중이다.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되는 초대형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⁶⁾. 본 협상의 경제적 효과는 10년간 최대 163억달러, 약 18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2) 한·터키 FTA 발효(2013.05.01)

2008년 6월 공동연구가 개시된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국내절차가 완료된 이후 2013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해당 FTA는 우리나라가 9번째 체결한 FTA이자 터키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이로써, 국내 수출입 기업은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에 앞서 터키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3) 한·EU FTA 추가 관세인하(2013. 07. 01~)

한·EU FTA가 7월 1일 발효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양측 관세 미철폐 품목의 추가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 EU산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000여개(HSK 기준) 품목의 관세율이 인하된다.

예를 들어, 중대형 승용차는 기존 관세가 3.2%였으나,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인하된다. EU 또한, 승용차 등 우리나라 수출물품 55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4) 크로아티아 EU 가입으로 對크로아티아 수출물품 한·EU 특혜관세 혜택 가능

2013년 7월 1일자로 크로아티아가 EU(EU의 28번째 회원국)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크로아티아 수출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한·EU FTA에 따라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수출자는 해당 인증을 사용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크로아티아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자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⁷⁾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7)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세청 FTA 고객상담센터(1577-8577)에 문의가능

02. FTA 최근 동향

III. 해외 FTA 협상 동향

1) 日·EU, 경제동반자협정(EPA)⁸⁾ 협상 시작

2013년 3월 25일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무역자유화 등에 관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2013년 4월 15일에서 19일까지 브뤼셀에서 무역 분야 제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은 최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⁹⁾에 참가의사를 밝히는 등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회복을 모색 중에 있다.

2) EU·미국 FTA 협상개시 합의

2013년 2월 13일 EU와 미국은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EU와의 FTA 체결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오바마 재선 이후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EU의회 대표 등이 언론을 통

해 지속해서 EU·미국과의 FTA 추진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이러한 EU측의 노력이 협상개시를 이끌어 내었다.

3) 미국 TPP 협상 가속화

2013년 미국의 가장 중요한 통상현안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 주도의 FTA 체결이 가속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에서 경제, 정치, 문화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코자 중국을 배제한 채 주도적으로 TPP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도 본 협정에 대해 2013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협상국¹⁰⁾도 올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전에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8)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경제 동반자 협정) - FTA 용어집 17번 참조

9) TPP(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 FTA 용어집 16번 참조

10) 2013년 현재 총 12개국

특 집 : 한·터키 FTA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한·터키 FTA가 2013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터키는 유럽·아시아·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한·터키 FTA로 인해 한 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섬유·의류 보호관세 철폐는 국내 수출기업에 호조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I. 터키 경제개관

터키 정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터키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었던 2009년 경제성장률 -4.7%를 기록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2010~2011년에는 각각 8.5%와 10.4%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다시 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터키의 1인당 GDP는 2010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구매력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이다.

터키 정부는 경제성장 추구하고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경제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경제안정의 측면에서는 물가상승률 억제정책 및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표 2-1 | 터키 경제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제성장률(%)	2.6	-	-
GDP(10억 달러)	799	888	952
1인당 GDP(달러)	10,673	11,716	12,412
실질 GDP성장률(%)	3.2	5.0	5.0
실업률(%)	9.0	10.2	9.9
수출액(10억 달러)	149.5	165.7	185.1
수입액(10억 달러)	239.5	272.5	295.9

자료 : 터키 경제부

특집 : 한·터키 FTA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NEXT-11(골드만삭스) : 터키, 한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 MIKT(골드만삭스) : 터키,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 VISTA(일본 브릭스 경제연구소) :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또한, 터키는 7천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Post-BRICs 국가군(NEXT-11, MIKT, VISTA 등*)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II. 한·터키 FTA 개요

한·터키 FTA는 터키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한·터키 FTA 협정은 2010년 4월 앙카라에서 첫 공식 협상을 벌인 이래 2012년 3월 26일 공식적으로 타결되었다.

협정 중 서비스·투자 협정 및 그 밖의 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될 것이다. 그리

고 한·터키 FTA는 2013년 5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시장잠재력, 전략적 중요성, 우리나라와의 교역구조를 고려할 때, 협정 체결로 인한 기대가치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터키는 유럽인구 2위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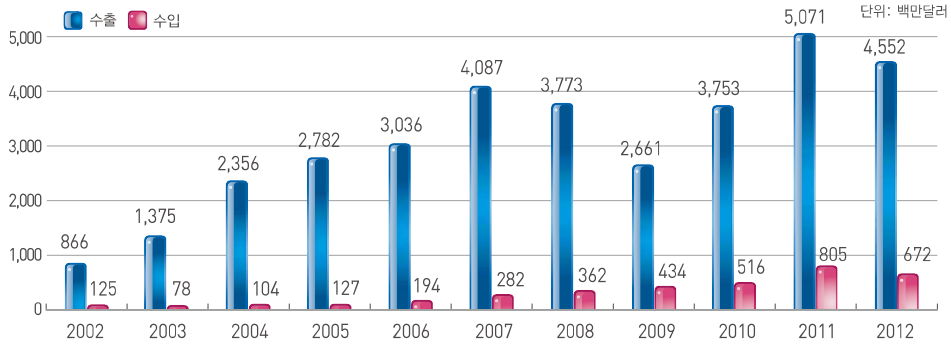
지정학적으로 터키는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중동시장 관문,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기대된다. 터키는 EU와 관세 동맹을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해왔는데, EU를 제외하면 발칸반도·동유럽·북아프리카 등의 소규모 국가가 대부분이다.

| 표 2-2 | 주요 협상 경과

구분	협상결과
2008.6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2010.4	한·터키 FTA 1차협상
2012.8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
2013.5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발효

자료 : 외교통상부

| 그림 2-1 | 한국의 대터키 교역현황(2002~2012)



우리나라와의 교역구조에 있어서도, 양국이 1957년 수교 이후 對터키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터키 FTA는 터키가 아시아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써,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는 경쟁국인 일본, 중국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한·터키 FTA는 한·ASEAN FTA 방식과 같이 기본협정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 및 그 밖의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만 체결되었으며 계속해서 서비스·투자협정¹¹⁾ 및 그 밖의 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III. 한·터키 FTA 협정 주요 내용

상품양허 우리측 99.6%, 터키측 100%를
10년내 관세철폐 예정

한·터키 FTA에서는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양측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품목(약 100%)을 10년내 관세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99.6%, 터키측은 100%를 10년내 관세철폐가 진행될 예정이다. 품목 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92.2%, 터키는 8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10년내 철폐되는 것이다.



11)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우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함.

특집 : 한·터키 FTA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상품 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공산품은 양측 모두 전 품목에 대해 7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농수산물의 경우 양허품목의 비중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2.5%, 터키가 52.7%이다. 수입액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95.7%, 터키가 97.3%로 유사

하다. 그러나 단기철폐(5년 이내 철폐) 비중은 수입액 기준으로 터키가 70.4%로 우리나라의 48.0%보다 높다. 특히, 40.7%에 해당하는 우리 측 민감 농수산물의 양허제외는 국내 1차산업 보호가 협상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표 2-3 | 한·터키 FTA 공산품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단위 : %

양허유형	한국 주요 품목			터키 주요 품목		
	품목	품목수	비중	품목	품목수	비중
즉시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조절기, 금속절삭기, 공기계 • 냉장고, 모자, 아연광, 양탄자 • 의료용기기, 광물성연료 (나프타, 원유, 기타석유제품) 	9,365	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S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 일부평판압연제품, 기타알루미늄제품 • 신변장식용품, 포트랜드시멘트, 합판, 섬유판 • 파티클보드, 조립식목재건축물, 철도차량부품 	7,389	77.8
3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부품 • 펌프, 계측기, 대리석 	20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용 고무타이어 • 공기조절기, 원동기와 펌프 • 볼트와 너트, 기타산업기계, 가열난방기 	350	3.7
5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식목재건축물, 제재목, 전동축 • 알루미늄의 판·шит, 화강암, 가솔린 경차, 가솔린/디젤 소형 	23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자동차부품, 면사 • 편직물, 일부 합성필라멘트사 •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냉장고 • 전동기, 가솔린/디젤 중·대형 	913	9.6
*7년 비선형 철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솔린/디젤 1,600cc이하 소형승용차(4개 세션) 	4	0.0
7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모사, 섬유모사, 직물합판 • 섬유판, 파티클보드(PB) 	12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모 및 섬유모 혼방직물 • 기어박스, 평판 • 압연제품, 칼라 TV, 세탁기 	835	8.8
총계		9,927	100		9,491	100

자료 : KIEP, 『한·터키 FTA의 영향분석』, 2012년 6월, p.58. 재인용

주 : 7년 비선형은 발효초기에 관세 삭감폭을 크게하는 방식/ 비중: 전체 품목수 대비 양허유형별 품목수

| 표 2-4 |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제의 주요 품목

구분	해당품목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
현행관세 유지	•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고등어류, 오징어 (생동/건조) 등

양허품목의 경우에도 관세부분감축¹²⁾, 장기관세철폐¹³⁾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감 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확보하는 한편, 농수산물 對터키 최대 수출품 및 수출 유망 품목¹⁴⁾에 대해서는 관세 즉시철폐를 확보하였다.

한·터키 FTA 원산지 규정 한·EU FTA와 유사하되 일부품목 완화

한·터키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은 EU와의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한·EU FTA상의 특혜 원산지 규정에 기본적으로 합의하되,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기준을 완화한 것이다.¹⁵⁾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¹⁶⁾과 부가가치기준¹⁷⁾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설탕과자(HS

1704), 초콜릿 함유 식료품(HS 1806) 및 기타 비스킷(HS 1905.90)에 대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한·EU FTA보다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면사(HS 5205), 재생필라멘트 직물(HS 5408),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HS 5510)는 각각 연간 200톤의 원산지 예외쿼터를 설정하여 교역을 촉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절차에 있어서도 한·EU FTA와 유사하게 수출자 자율증명방식¹⁸⁾이며 발급방식 또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방식을 채택하였다. 참고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표 2-5 참조)

다만, 한·터키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를 인증수출자로 한정하지 않은 점이 한·EU FTA와 상이하다.

12)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예외적 사항으로 관세인하 수준을 10~30%로 조정, 인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유지

13)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예외적 사항으로 장기철폐 품목은 10년간 장기에 걸쳐 관세를 인하함.

14) 인스턴트 커피, 담배, 라면, 기타 조제식료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 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량어 등

15) 외교통상부(2012), 한·터키 FTA 상세설명자료

16) FTA 용어집 6번 참조

17) FTA 용어집 7번 참조

18)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

특집 : 한·터키 FTA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표 2-5 | 한·터키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작성방법

원산지 신고서 문안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① preferential origin. ② (Place and date) ③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작성방법
<p>①란 : '제품의 원산지를 작성 (예 : KR, KOREA, TR, TURKEY) ②란 :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와 작성일자'를 작성 ※ 해당 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생략 가능 (해당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함) ③란 : '수출자의 서명과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p>

**한·터키 FTA 섬유·의류 보호관세 철폐로
국내 수출기업에 호조**

우리나라와 터키의 섬유산업 교역구조는 한국이 원사, 직물 등 섬유소재를 주로 수출하고, 터키는 이를 가공한 후 EU, 중동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보완적 가공무역 형태를 띠고 있다.

터키는 우리나라의 10위권 섬유 수출국으로써, 섬유수출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2012년 기준).

2012년 對터키 섬유류 수출은 231백만달러, 수입은 63백만달러에 이른다.

또한, 터키는 전통적으로 섬유 및 의류 관련 산업이 발달하여 EU 시장내에서 제4위 섬유 수출국이다 (2012년 기준). 그러나 중국산 등 저가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섬유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¹⁹⁾ 특히, 터키측에서는 2011년 9월부터 섬유·의류부문에 대한 추가 수입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 국가에는 동조치 대상이 EU와의 관세 동맹

| 표 2-6 | 한·터키 섬유 교역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	수출	수입
2010	271,787	51,425
2011	297,601	56,189
2012	230,639	56,189

19) 한국수출입은행(2013), 한·터키 FTA 발효 이후 대터키 산업협력 증진방안

| 표 2-7 | 섬유·의류 산업보호관세 적용품목

단위 : US\$/kg, %

구분	HS 코드 및 품명	최소 (US\$/kg)	추가 관세 (%)	최대 (US\$/kg)	
부속서 1	양모직물·면직물· 인조·섬유직물	5111, 5112, 5208, 5209, 5509, 5210, 5211, 5407 5408, 5512, 5513, 5514, 5515, 5516	1.25	20	4.25
	의류	6101-6110, 6112, 6201-6208, 6211	5.5	30	20
부속서 2	섬유·사·직물	5212	1.25	20	4.25
	부직포·양탄자· 특수 직물 등	5603, 5608, 5901.10-0000	-	12	4.25
	편물	6001-6006	-	20	4.25
	섬유·사·직물	5309.21, 5309.29	-	12	4.25
	부직포·양탄자· 특수직물 등	5801, 5802	-	20	4.25
		5903	-	14	4.25
		6209, 6212	5.5	30	20
		6215	-	30	20
기타섬유제품	6302	1.25	20	4.25	

자료 : 터키 관보(2011.09)

에 따라 해당하지 않으나,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는 추가 수입 관세²⁰⁾(12~30%)가 부과되었다.²¹⁾

한·터키 FTA 협정발효로 섬유·의류에 부과되었던 터키측 산업보호관세는 철폐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섬유·직물업계의 터키 수출시 애로 사항이 다소 해결되고 중국, 인도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되었다.

IV. 맺음말

한국과 터키의 교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12년 기준으로 터키는 한국의 11위의 무역 흑자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터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경제 부흥 정책이 맞물리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 본 관세는 통관가격에 과세됨

21) 한국화섬협회(2013), 한·터키 FTA 타결현황 및 주요이슈

특집 : 한·터키 FTA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표 2-8 |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

주요 수출품목 (HS Code)	현행 관세율 (터키)	양허시기
석유 제품 (27)	3.5~4.5	즉시
석유 화학 제품 (29)	0~6.5	즉시
플라스틱 (39)	0~6.5	즉시
합성 고무 (40)	0~2.9	즉시
섬유 (60)	8	5년
철강 (72)	0~15	즉시~7년
기계 제품 (84)	1.7	즉시
전기·전자 제품 (85)	0~14	즉시~7년
승용차 (87)	3~10	즉시~7년
화물차 (87)	0~22	즉시~7년

자료 : 외교부 및 WTO

한·터키 FTA는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 증가로 5년간 6.3억달러 이상의 교역증대 및 4.4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예상된다.²²⁾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호조가 될 것이다.

현재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절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나 한·터키 FTA 체결로 인해, 양국간 교역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인하 효과 이외에도 수출입여건 및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양국간 산업협력 증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터키는 거대한 내수시장, 지리적 요충지이며, 터키가 체결한 FTA 중 아세안 국가와의 최초 FTA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협정을 잘 활용한다면, 한·터키 FTA는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을 가져다주고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2) 2010년 교역액 및 실행관세율 기준, 외교부(2012), 한·터키 FTA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